

## 환경업무정보

\* 본란에서는 환경현장 실무에 적용 또는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발췌 및 입수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 1992.1.30. 금표예정 : 92. 4月초)

#### 가. 주요골자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음식료품 제조 가공시설을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세분화하고 건축용 화이버보드제조시설의 숙성시설 등 5개 시설을 신규 배출시설로 정함(별표3)

② 악취측정 방법을 현재의 관능법, 식염수법에서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으로 변경하고 암모니아 등 8개 물질은 직접관능법과 기기분석 법을 병행토록 함(별표 7)

③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에 구조접토 제조

업 등 3개 사업을 포함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에 건축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방지시설 기준을 추가함.(별표 13 및 별표 14)

④ 경유사용 승용 제작차의 매연을 저감하기 위하여 입자상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중 벤젠함량과 10% 산류 탄소량의 기준을 '93년부터 강화하며, 방향족 화합물 함량과 산소함유량의 기준을 강화하여 '96년부터 적용하도록 함(별표 16, 별표17 및 별표 24)

#### 나. 변경내용(산업체 해당 변경부분 요약 발췌)

①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규칙 제4조 관련)

구 분	배 출 시 설(해당시설)	규 모	해 설
1. 금속제품 제조·가공 시설	(※ 전과동일) 도가니로 ..... 소결로(냉각시설을 포함한다.) ..... 도장시설 ..... 납땜시설(납용해조를 포함한다.) .....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 용적 5m <sup>3</sup> 이상 또는 동력3마력이상 ..... ..... 자동식 시설로서 용해조 용적이 0.15m <sup>3</sup> 이상 또는 수동식 150대이상	규모의 내용추가 소결로에 냉각시설포함 규모에서 동력1마력을 3마력으로 완화시킴 규모에서 용적 0.01m <sup>3</sup> 을 0.5m <sup>3</sup> , 20대에서 150대로 완화시킴
2. 산업용화학제품제조·가공시설	(※ 전과동일) ..... ..... ..... 성형시설(압출 및 사출을 포함한다)	..... ..... .....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40kg이상	규모의 내용에서 주원료 사용량을 원료사용량으로 범위변경
3. 기타화학제조 가공시설	(※ 전과동일)	(※ 전과동일)	(※ 전과동일)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 가공시설	(※ 전과동일) ..... 건조시설	.....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m <sup>3</sup> 이상	건조시설 추가
5.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 시설	(※ 전과동일)	(※ 전과동일)	(※ 전과동일)

구 분	배 출 시 설(해당시설)	규 모	해 설
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가공 시설	(※ 전과동일)  권취시설(석면 및 암면 제품제조가공시설에 한 한다.) 성형시설(습식을 제외 한다.)  압착시설(석면 및 암면 제품 제조가공시설에 한한다.) 탈판시설(석면 및 암면 제품 제조가공시설에 한한다.) 방사 접면시설(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 가공시 설에 한한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 시설을 제외한다.)		권취시설의 해당 범위를 한 정지음 성형시설 한계를 정함 압착시설의 해당범위를 한정 지음 탈판시설의 해당범위를 한정 지음 방사접면 시설의 해당범위를 한정지음.  건조시설 제외 대상을 정함
7. 가죽 제품 제 조·가공시설	(※ 전과동일)  원피저장시설(생피를 포함한다.) 도장시설  석회적시설	용적 5m <sup>3</sup> 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 상	저장시설에서 원피저장시설 로 명칭 및 범위변경 규모에서 용적 3m <sup>3</sup> 을 5m <sup>3</sup> 로 동력 1마력을 3마력으로 완 화시킴 종전유제시설에서 석회적 시 설로 명칭변경
8.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 가공시 설	(※ 전과동일)  도장시설	용적 5m <sup>3</sup> 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 상	규모에서 용적 3m <sup>3</sup> 을 5m <sup>3</sup> 로 동력 1마력을 3마력으로 완 화시킴
9. 종이 및 담배 제품제조 가공시 설	나. 건축용지 제조 시설(하이버보드에 한한다)  (※ 전과동일)	숙성시설  (※ 전과동일)	배출시설업체 추가(하이버보 드)  해당배출시설 추가
10. 음식료품 제 조·가공시설	나. 음료 품 제조 시설(비알콜성 음료 제조시설을 제외한 다.) 다. 육지동물 고기 가공 저장시설 라. 당류제조시설 마. 수산물처리 가 공시설(수산물 냉동 식품제조시설을 제 외한다.)	혼합시설(음료품 제조 시설을 제외한다.) 계량시설(도정 및 제분 시설, 단백질 및 배합 사료 시설에 한한다)	배출시설 해당 범위를 축소 함. 배출시설업체 추가 및 범위 변경 " " "

구 분	배 출 시 설(해당시설)	규 모	해 설
	바. 도점 및 제분시설(임가공을 포함한다.) 사. 살탕제조시설 아.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자. 커피 및 차 제조시설 차.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포장시설(동·식물유지,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에 한한다)	" " " " " ※ 일부 배출시설의 한계를 정함.
11.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	(※ 전과동일)	재양(텐터)시설 모소시설 기모(식모)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m <sup>3</sup> 이상 연료사용량이 일일 20kg이상 또는 용적 1m <sup>3</sup> 이상 용적 1m <sup>3</sup> 이상
12. 공통시설	(※ 전과동일)	(※ 전과동일)	(※ 전과동일)
	나. 보일러	일반보일러[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가스류)만을 연료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소각보일러	보일러의 광호내용삭제, 배출시설에서 가스 보일러도 제외사항 추가
	다. 소각시설	특정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	산업폐기물을 특정 폐기물로 명칭변경

\* 비교1.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 열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  
 4. ....  
 5. ....  
 6. ....  
 7.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을 이용하여 자연건조 시키는 경우의 시설은 제외한다.

8. 습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원료사용량이라 함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기타 각종첨가제 등 부원료를 합한 량을 말한다.

10. 위의 배출시설 중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처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② [별표 7] 배출허용기준(규칙 제9조 관련)

1. 가스상물질 중 질소산화물(NO<sub>2</sub>로서)
  - 액체연료사용 시설란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 물 열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94.12.31일까지	'95.1.1. ~ '98.12.31일까지	'99.1.1일 이후
질소 산화물 (NO <sub>2</sub> 로서)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기타시설	1400(13)ppm이하 250(4)ppm이하	1400(13)ppm이하 250(4)ppm이하	950(13)ppm이하 250(4)ppm이하

2. 입자상 물질의 먼지항목중 “사. 아스콘제조시설”을 “사. 아스콘제조시설 중 소성시설”로 한다.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먼지의 라의 건조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 용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악취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측정방법	배출허용기준
직접관능법	2도이하
공기회석관능법	1) 배출구 : 400이하 2) 부지경계선 : 10이하
기기분석법	1) 암모니아 : 2ppm 이하 2) 메틸베르 кап탄 : 0.004ppm 이하

측정방법	배출허용기준
	3) 황화수소 : 0.06ppm 이하
	4) 황화메틸 : 0.05ppm 이하
	5) 이황화메틸 : 0.03ppm 이하
	6) 트리메틸아민 : 0.02ppm 이하
	7) 아세트알데히드 : 0.1ppm 이하
	8) 스틸렌 : 0.8ppm 이하

비고 : 측정방법은 대기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관능법 또는 공기회석관능법(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설치하되 시료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경우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③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규칙제 48조관련)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해 설
1. 시멘트·석회프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마. (삭제)	대상사업에서 “마. 헝 삭제”
2.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가. 토사석 채취업(골재보관·판매업 포함)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연탄공장 및 기타시설 포함) 다. 내화물 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마. 도기·자기 및 토기제조업 바. 구조 점토 제조업 사.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	대사사업 추가 및 변경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대상사업 추가 및 변경
4.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가. 화학 비료 제조업 나. 배합 사료 제조업 다. 곡물 가공업	대상사업 범위 및 명칭변경
5. 건설업	(※ 내용생략)	대상사업명칭 및 일부내용 변경
6. 토사운송업	(※ 내용생략)	〃

### ④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규칙 제49조 제2항 관련)

※ 배출공정 중 공사장이 추가 되고 시설기준(설치 및 조치) 내용이 다소변경 및 추가되었음.

### ⑤ [별표 15] 생활악취의 규제 대상시설별로 규제기준 및 내용(규칙 제51조 관련)

※ 대상시설(업)중 쓰레기적환장, 공중변소, 세탁업, 폐기물보관장이 추가되고 규제기준 및 규제내

용이 다소변경되었음(※ 내용생략)

### ⑥ [별표 16]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규칙 제52조 관련) [별표 17] 배출가스보증기간(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8] 제작차 검사의 장비 및 기술능력(규칙 제60조 관련)

[별표 19] 검사수탁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규칙 제62조 관련)

[별표 20]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규칙 제69조 관련)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규칙 제82조 관련)

[별표 24]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규칙 제86조 관련)

[별표 27]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04조 관련)

※ 내용 및 기준이 다소변경되었음(※ 내용생략)  
다. 집행 및 현장업무 수행

① 이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토록

## 2. 소음·진동 배출 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응답(환경처 "소음·진동 업무편람" 발췌)

질의 내용	회신 내용 (환경처)
1. 반응기의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반응기 내부의 잔존산소를 제거하여 반응기의 활성제의 투입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 기계로 기능은 진공 pump와 동일한 것인데 소음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진공 pump는 펌프에 의해 진공상태를 대기압 이하로 유지한 후 이 진공상태를 이용하는 기계로 대기압의 압력을 발생시켜 이를 이용하는 압축기와는 원리 및 구조면에서 상이하므로 소음진동 규제법상의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2. 소음배출공장이 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일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 소음도를 14:00에 측정하였을 때 보정치는 얼마로 하여야 하며, 공장의 부지경계선이 모두 공장지역일 때 피해가 예상되는 부지경계선의 측정지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일 24시간을 가동하는 공장에서 낮시간(06:00~18:00)에 소음을 측정하여도 밤시간대 보정치인 "+10"을 적용하며, 시간대는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익일 06:00)을 말하며, 측정 지점은 소음원의 부지경계선 중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그 피해 대상이 반드시 민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진공펌프 및 감속기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진공펌프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속기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중 변속기에 해당됨.
4. 동일장소에 2대 이상 진동배출시설이 있어 동력 합계가 배출 시설 규모이상일 경우 배출시설 적용여부? (예: 프레스 15HP 2대, 10HP 3대)	진동배출시설은 1대당의 동력규모이며, 프레스 2대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동력 합계 규모가 20HP 이상이라도 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5. 냉각수펌프, 제상수펌프, 배수펌프 등 펌프류를 설치할 경우 소음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각종 펌프류는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6. 이동형 압축기(15마력)가 소음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소음배출시설에 규정된 일정규모이상의 시설 및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차량에 적재하여 다니는 이동식 시설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이동식(형)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
7. 식품제조업체에서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국 각지역의 지점에 설치한 제품보관용 냉장 창고의 설비(압축기, 송풍기 등)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식품제조업체에서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각지역에 설치한 보관용 냉장창고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공장이 아니므로 동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은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8. 공장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1000마력) 가동중인 시설 중 500마력을 폐쇄하고, 250마력을 증설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40)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100분의 20(40) 미만일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귀업소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규모인 1,000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출시설 변동(증감) 결과 그동력 합계가 1200(1400)마력 이상이 되는 시점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9. 폐수방지시설 중 Roots-Blower는 소음배출 시설에 해당하는지?	폐수방지시설 중 Roots-Blower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소음 배출시설인 송풍기로서 10마력 이상인 경우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10. 공장내에 엘리베이터가 동력 20마력이상일 경우 변속기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장내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소음배출 시설 중 변속기에 적용하여 규제되어야 함.